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3

2012년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9월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25일

다. 상정일자 :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10월 10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학 행정국장)

가. 제안 이유

서울광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광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1) 광장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 개시일의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개정함(제5조제1항).
- 2)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 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6조제2항).

3)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토록 개선함(제10조제3항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제9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비중요규제, 수정의결)

관련조문	심사결과	검토의견
2250	ㅁ/ 1 / 근 ~ 1	10年刊化
	○ 구체화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필요	○ 반영
	- '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안 제6조제1항제3호를
	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들의 예측가	예시안과 같이 구체화된
안 제6조	능성을 저해하므로 아래와 같은 구체화된 명확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제1항제3호	한 표현으로 수정 필요	
(사용신고수리)	(예시)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	
	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 될 경우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시항을 위 반한 경우	
	○ 미신고 사용단체 등의 공개는 수단이 과도하므로	○ 반영
	철회 권고	-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인 제9조의2	- '미신고 사용단체 등의 공개'는 개인 신상정보	근거가 없어 규제 법정
(미신고 사용	공개제도가 현재 고액·상습체납자와 청소년	주의에 위배되므로 철회
단체 등의 공개)	성범죄자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에 이루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그 수단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판단됨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원안동의).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협의완료(공공갈등진단표 제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8.9~2012.8.2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광장사용신고 기간(안 제5조)

71. 0.0.10 000 710 (0.71000)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u>제5조(사용신고)</u>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u>자는</u>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	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
<u>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u>	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u>한다.</u>	<u>야 한다.</u>
<신설>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u>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u>
	있 <u>다.</u>
<u><신설></u>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
	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
	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
	<u>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u>
<신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조례안은 광장사용신고기간의 사용일 기준을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에서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시장이 별도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광장사용신고를 받아 광장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 정안임.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신고자가 다수 있을 경우 탈락자가 다른 행 사장을 물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는 보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광장사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임.
- 광장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및 무대 설치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한 충분 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고 함.
- ※ 현행 조례에 따라 사용일 60일전에 광장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신청인은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고 함.
- 또한 개정조례안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 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광 장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약 22건에 해당하는 국경 일 등의 기념행사가 서울광장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시민단체 등 광장사 용 수요가 많은 기간(4~6월, 9~10월)에는 사용신고의 중복에 따른 갈등이 상당하다고 함.
- 개정조례안은 국경일 기념행사 등을 위해 광장사용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연도 광장사용일(30일이내)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광장 사용의 갈등과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사실상 시장이 주도하는 연간광장사용일 설정은 관제행사 위주의 광장사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고 하겠음.

제224회제2차 본회의 회의록(2010.08.13)

ㅇ김동욱 의원: 본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시민에게 자유롭게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렴하고 일부 보완하여 7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중략)----

시민 여러분은 그동안 집행부가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가 65%의 관 제행사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도 허용하였다면 주민청구개정안이 제출되었겠습니까?

나. 광장사용신고 기간(안 제5조)

혀 햇

세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상은 세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 우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작성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수 있다.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 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 유를 명시한 내용인 바. 현행 조례와 달리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하였음.
- ①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제3호)
- ②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제4호)
- 개정조례안 제3호는 동일 단체가 계속 사용신고할 경우 독점적 사용에 따라 다른 신고인과 일반 시민들의 광장이용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함.
- 그러나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광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은 포괄적 위임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광장사용 우선순위(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② 제1항에 따라 사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②제1항에 따라 사
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u>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u>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
	<u>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u>
	<u>있다.</u>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삭 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삭 제>
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u><삭 제></u>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u><삭 제></u>
결정한 행사	<u><삭 제></u>

- 현행 조례는 광장사용신고자의 사용신고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지만, 예외적으로 우선·수리할 수 있는 행사를 각 호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우선되는 행사간에 선순위가 없어 실무상 협의나 협상을 통해 조정 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조정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의 절차가 명 확하지 않게 되어 있음.
-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과 같이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신청의 경우 협의나 협상으로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부터 2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바, '집회 및 시위' 따른 행사에 대한 별도의 우선권을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익목적 또는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등을 우선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경우 보다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광장의 성격 및 선언적 의미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
- ※ 개정조례안에 따를 경우 광장신고자는 사용일 90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으므로 휴일 과 법정공휴일은 사실상 선점된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 신고자는 30일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을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려울 것으로 보임.
- ※ 대부분의 집회 및 시위는 시류적인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민의 직접적 참여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개월전부터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u>신고서</u>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u>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광장은 '집회 또는 시위' 와 관련된 역사적 장소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전 '허가제' 형태로 운영되었던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변경한 연혁 또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감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2008년 한국과 미국간의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소위 '광우병 파동'이 서울광장과 청계천광장을 중심으로 촛불시위 형태로 상당기간 진행된 바, 정치적·외교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은 바 있음.

라. 사용료 징수 기준 및 반환가산금(안 제10조 및 부칙)

변 행 개정 안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생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다만,</u>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u>다만,</u>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 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공

<신 설>

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화한다.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

○ 개정조례안은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후 반환하고 신고자의 귀책사 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니하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u>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u>를 가산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또한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일정수준(1시간·1㎡·10원)으로 동일하게 하고 최소 사용면적(500㎡) 및 기본사용시간(2시간)을 설정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 개정된 징수기준에 따를 경우 광장동편(2,000㎡), 광장서편(1,200㎡), 잔디 광장(6,440㎡), 전체(13,207㎡)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수의 작은 면적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자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광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광장사용료 규정이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개정

구분	사용 기준	금액 (원)	비고
기 본 사 용 료	1시간, 1㎡당	10 ~ 20	
기 타	1. 광장면적의는 경우 전부를 2. 사용시간이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 기본사용료의 3 4. 초과사용료 야간은 기본사용 ※ 시설물의	사용한 것으 1시간 미만 - (18:00~다음\ 할을 가산한다 는 주간은 기본 -료의 5할을 기 설치 및 철거	로 본다. 인 경우에는 날 06:00)는 나. 사용료의 3할, 나산한다.

<u>. </u>				
구분	사용면적	사용 시간	시용료	비고
기 본 사 용 료	500㎡이내	2시간	10,000원	
	광장동편 (2,000㎡)	2시간	40,000원	
구획별	광장서편 (1,200㎡)	2시간	24,000원	
사용료	잔디광장 (6,449㎡)	2시간	128,000원	
	전 체 (13,207㎡)	2시간	264,000원	
	1. 광장 구획별: 한다. 2. 사용시간이		행사에 대해서민	
	로 본다.		-1년 년 '8구'에 단위로 부과한다	
기타	3. 야간사용료(용료의 3할을 기	18:00 ~ }산한다.	다음날 06:00)는 기본사
	4.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학	할을 가서	ŀĕŀ⊏ŀ.	
	5. 사용료에는 ※ 시설물의 설	무기가지	I세들 포함한다 철거시간은 사용	: :시간에 포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서울시장이 조례가 명시한 절차를 위반하여 인기가수 '싸이'의 공연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사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권 행사라고 할 것임.
- (답변) 하이서울페스티발을 준비하는 서울문화재단이 행사관계자의 양해를 구하여 '싸이'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열린광장운 영시민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누락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앞으로 서울광장운영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질의)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광장사용우선 대상을 삭제하고 있으나,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취지로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연혁 등을 감안할 때 굳이 삭제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임.
- (답변) 대부분의 광장사용신고 사유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과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균등하게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집행부 단독이 아닌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인 바,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림.

6. 토론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익적 광장사용의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광장사용료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023

제안년월일 : 2012년 10월10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공익적 광장사용의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광장사용료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4호).
- 광장사용 신고 우선수리 행사를 현행과 같이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과 사용료를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 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Ä	구분	시용면적	사용 시간	시 용 료	비고
기본사용료		1 m²	1시간	10원	
	광장동편	500 m ² ~2,000 m ²	2시간	10,000원~40,000원	
구획별	광장서편	500 m ² ~1,200 m ²	2시간	10,000원~24,000원	
사 용 료	잔디광장	500 m ² ~6,449 m ²	2시간	10,000원~128,000원	
	전 체	13,207 m²	2시간	264,000원	
1. 광장 구 ※ 최소 시 10원으로 ※ 기본 시 로 부과한 기타 2. 야간사를 가산한다 3. 초과사용 5할을 가		※ 최소 사용면적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 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2	은 500㎡ 현 은 2시간으로 :00 ~ 다음 주간은 기본시 가가치세를 포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 하되, 500㎡ 초과시 1 는 하되, 2시간 초과시 날 06:00)는 기본사용 나용료의 3할, 야간은 기 다합한다. 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시간 1㎡당 1시간 단위 료의 3할을 본사용료의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념행사나 충분한 사전	
	전비 및 홍보 등이 필	
	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세18에도 불구하고</u> 연간 30일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	
	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 </u>	
	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	
	<u> </u>	
	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서울특별	
	시 열린광장운영시민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광장 사용일을 미	
	리 확정한다.	
	<u> </u>	
	따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	
	할 사항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신고 수리)	제6조(사용신고 수리)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① 시장은 제5조의 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	(개정안과 같음)
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용신고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는 원칙적으로 수리하	
한다. 다만, 광장의 조	여야 한다. 다만, 다	
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	에 해당될 때에는 위	
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	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 신체·생명 등에 침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u>할 수 있다.</u>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1. 광장의 조성 목적	1. (개정안과 같음)
는 「서울특별시 열린광	에 위배되거나 다	
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른 법령 등에 따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용이 제한되는	2. (개정안과 같음)
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	<u>경우</u>	
<u>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u>	2. 시민의 신체·생명	
(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에 침해를 가할	3. (개정안과 같음)
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우려가 있는 것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	로 예상되는 경우	
<u>다.</u>	3. 동일 목적의 행사	
	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	
	사와 중복될 경우	
	4. 기타 규칙에서 정	<u>4. (삭제)</u>
	하는 사용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	
	<u>우</u>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2	②
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		
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	, 신고	, 다음 각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u>· · · · · · · · · · · · · · · · · · </u>	· · · · · · · · · · · · · · · · · · ·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	는 그 신고자들과 협	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여 수리할 수 있다.	의를 통해 조정하고,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의 수리를 결정할 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있다.	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
		의 수리를 결정할 수
1. 공익을 목적으로 국	<u>〈삭 제〉</u>	있다.
<u>가 또는 지방자치단</u>		<u>1. 〈현행과 같음〉</u>
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	<u>〈삭 제〉</u>	
한 법률」에 따른 집		<u>2. 〈현행과 같음〉</u>
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	<u>〈삭 제〉</u>	
화, 예술행사		<u>3. 〈현행과 같음〉</u>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	<u>〈삭 제〉</u>	
련 행사	<u>〈삭 제〉</u>	<u>4. 〈현행과 같음〉</u>
5. 그 밖에 '공익적 행		
사'로서 위원회에서		<u>5. 〈현행과 같음〉</u>
<u>결정한 행사</u>		
③ 시장은 <u>서울광장</u> 사용	③광장	③ (개정안과 같음)
신고자의 성별 장애 정치		
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지느 al 디디		
서는 안 된다.	 - 레이크(기크스키네오 버	레이크 (레기시리 기.이)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	제8조 (개정안과 같음)
및 취소) 시장은 제7조에	경 및 취소)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		
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		
견을 들어 <u>신고수리의</u> 내	<u>신고수리된</u> -	
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u>미리</u> 통지하	<u>즉시</u>	
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제)	면제)	면제)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3	③ (개정안과 같음)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u>삭</u>	
러하지 아니하다 <u>.</u>	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	
	<u>여 반환한다.</u>	
<u>〈신 설〉</u>	④ 신고자의 사정으로	④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④</u> (생략)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개정안과 같음)
<u>⑤</u>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개정안과 같음)
<u>⑥</u> (생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광장사용료기준(제10조관련)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사용면적 사용 사용료 비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구 분 사용면적 사용료 고 기 본 사용료 500㎡이내 2시간 10,000원	기본사 1개 10원
기 본 사 1㎡당 용 료	광장동편 (2,000㎡) 2시간 40,000원 광장서편 (1,200㎡) 2시간 24,000원 사용료 전디광장 (6,449㎡) 2시간 원	확광장 500㎡~ 2시 10,000원~ 별서편 1,200㎡ 간 24,000원 시간디 500㎡~ 2시 10,000원~ 용광장 6,449㎡ 간 128,000원 로 전 13,207㎡ 2시 264,000원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전 체 (13,207㎡ 2시간 원 264,000 원 기.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2.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시간으로 본다. ※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3. 야간사용료(18:00 ~ 다음기타 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5.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기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광장을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 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 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광장"을 "광장"으로 한다.

-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제8조 전단 중 "신고수리의"를 "신고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미리"를 "즉시"로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시용면적	사용 시간	시 용 료	비고	
기본사용료		1 m²	1시간	10원		
구획별 사용료	광장동편	500 m ² ~2,000 m ²	2시간	10,000원~40,000원		
	광장서편	500 m ² ~1,200 m ²	2시간	10,000원~24,000원		
	잔디광장	500 m ² ~6,449 m ²	2시간	10,000원~128,000원		
	전 체	13,207 m²	2시간	264,000원		
기타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00㎡ 하되, 500㎡ 초과시 1시간 1㎡당 10원으로 한다. ※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되, 2시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u>冼</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2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u>단체</u> 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3
조례에 따라 <u>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u>	<u>광장을 사용하는 자</u>
<u>는 단체</u> 를 말한다.	
제5조(사용신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u>자는</u>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	
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	사용하고자
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한다.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u>있다.</u>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
	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
	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
	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 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 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열 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 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 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 1. ~ 5. (현행과 같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 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 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 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2)		 	
	,	 	

- -.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 를 결정할 수 있다.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 장 | ③ ---**광장**--애 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 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시장은 제8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 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 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신고수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 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생략)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 | ③ -----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 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 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사용료에 공유재산 다.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

⑷ (생략)

(5) (생략)

〈신 설〉 ④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략)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사용 기준	금액 (원)	비고	
기 본 사 용 료	1시간, 1㎡당	10 ~ 20		
기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사용면적	사용 시간	시 용 료	비고
기본사용료		1 m²	1시간	10원	
구획별 사용료	광장 동편	500m²~ 2,000m²	2시간	10,000원~ 40,000원	
	광장 서편	500m²~ 1,200m²	2시간	10,000원~ 24,000원	
	잔디 광장	500m²~ 6,449m²	2시간	10,000원~ 128,000원	
	전 체	13,207m²	2시간	264,000원	
1. 광장 구획별로 1건의 신고수리 한다. ※ 최소 사용면적은 5. 초과시 1시간 1㎡당 10 ⁴ ※ 기본 사용시간은 2 ⁴ 간 초과시 1시간 단위로 기 타 2. 야간사용료(18:00 ^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선 3.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 ² 4. 사용료에는 부가가치 ※ 시설물의 설치 및 칠에 포함한다.			10원으로 한다. 2시간으로 하: 로 부과한다. I ~ 다음날 0 'I산한다. !은 기본사용료 5할을 가산한다 '치세를 포함한	500㎡ 되, 2시 6:00)는 의 3할, h. 다.	